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415
----------	-------

발의연월일 : 2026. 6. 22.

발 의 자 : 권향엽 · 허성무 · 이수진  
임호선 · 진성준 · 김현정  
이훈기 · 임미애 · 김 윤  
이기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로서 사행행위 영업, 일부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 및 그 밖에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음성·화상 대화를 매개하거나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등을 하는 업소가 이에 해당함.

그런데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하여 성인용 음란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의 출입 및 고용이 허용될 경우 청소년에게 불건전한 영향을 미칠 것이 상당히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음란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 또는 송출하는 영업소도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명시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경우로부터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가목).



##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가목에 1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하여 송출하는 영업

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p>나. (생략) 6. ~ 8. (생략)</p>	<p><u>해당하는 행위를 표현하는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통하여 송출하는 영업</u> <u>가) 성교 행위</u> <u>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u> <u>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u> <u>라) 자위 행위</u> 나. (현행과 같음) 6. ~ 8. (현행과 같음)</p>
---------------------------------	---